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비공식 번역

OECD 법적 수단



이 작업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판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의견과 사용된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의 경계,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권한 없이 무료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OECD** 공식 번역물이 아닙니다. 원문에 기초해 국문으로 번역 되었으며 공식 영문 및 불문 버전은 아래 **OECD**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egalinstruments.oecd.org>

본 위원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 (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 1, 2a, 3, 5b조를 유념하며;

규제의사결정을 위한OECD 참조평가표를 포함하여 정부규제의 질 개선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을 유념하며;

1997년 OECD 규제개혁 보고서, 2005년 규제의 질 및 성과 지침, 규제개혁 APEC-OECD 통합 평가표, 그리고 경쟁평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C(2009)130]을 유념하며;

규제의 질과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와 체계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이룩한 상당한 진전을 의식하며;

정부들이 직면하는 오늘과 근미래의 도전과 문제는 지금까지의 OECD 결정이 조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규제 차원을 포함함을 의식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른 규제체계에 달려있고 또한 이를 강화시킴을 인식하며;

규제는 정부가 경제 번영을 촉진시키고 복지를 강화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수단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바르게 설계된 규제는, 규제비용을 능가하는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사회적 평안(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규제가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개정되는 방식에 대한 정부 정책체계로서의 규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최고위급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좋은 거버넌스가 정부 부처간 및 수준간의 경계를 넘어 이행될 것을 요구함을 의식하며;

금융위기와 경제주기, 혁신, 사회적 변화, 환경문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추구 등은 바르게 작동하는 시장과 사회를 위한 규제체계의 중요성과 분야간 및 국가간의 상호연결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의식하며;

OECD가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과 범정부적 접근법에 대한 바른 규제관행 집행을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의식하며;

규제정책 위원회는 2009년도에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규제 품질과 개혁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의식하며;

I. 회원국에게 다음을 추천한다:

1. 규제 품질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 정책을 위해 정치적 최고수준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 정책은 규제가 활용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득이 비용을 넘어서고 분배효과가 고려되었으며 순 편익이 최대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과 집행체제를 가져야 한다.
2.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하여 개방정부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규제 시 공익을 피하며 규제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자의 타당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안 초안 작성과 이를 위한 분석의 품질관리 준비과정에 대중이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온라인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가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이 쉽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규제정책 과정과 목표를 관리하고, 규제정책을 지지하고 집행하고, 그럼으로써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한다.
4.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이하 RIA)을 새로운 규제제안 시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 통합시킨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평가한다. 규제 이외의 방법을 고려하며 최상의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된 여러 접근법 간의 장단점을 식별한다.
5. 명확하게 정의된 정책목표와 대조하여 주요규제를 평가하는 조직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규제가 최신식이고 비용이 정당화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6. 규제정책, 개혁 프로그램, 규제를 적용하는 공권력의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규제영향분석(RIA), 공공협의 이행, 기존 규제의 평가 등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7.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총괄하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설계한다. 이는 규제관련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되 일관되게, 또한 이해의 충돌, 편견, 부적절한 영향 없이 내려지는 것에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 규제의 합법성과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규제 제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보장

한다. 시민과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적절한 가격에 접근하고 시기적절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전략을 규제의 설계와 실행에 적절하게 적용한다. 이는 규제가 특정대상을 목표로 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담당자는 규제가 어떻게 실행될지 평가하고 대응적 집행과 시행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10. 적절할 경우, 초국가, 국가, 국가하위 정부수준 간 규제의 일관성을 촉진한다. 정부수준 간의 공통되는 규제문제를 식별하고 규제 접근법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규제의 중복과 충돌을 피한다.
 11. 하위정부 수준에서의 규제관리 역량과 실적의 발전을 지원한다.
 12. 규제방책을 만들 때 같은 분야 내의 협력을 위해 관련된 국제 기준과 체계를 고려하며, 적절하다면 이들이 분야외 당사자들에게 끼칠 만한 영향도 고려한다.
- II.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규제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책을 추구하는 현명한 규제를 사용하고, 본 권고안에 담긴 원칙은 불가결한 부분인 부속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기를 추천한다.
- III. 본 권고안을 전파하도록 회원국과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 IV. 비회원국이 본 권고안을 고려하고 고수하도록 요청한다.
- V. 규제정책위원회가 본 권고안의 이행을 주시하고, 관련 OECD 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 뒤 3년 내에 보고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은 2012년 3월 22일에 채택되었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부속서

1. 규제 품질에 대한 명시적인 범정부적 정책을 위해 정치적 최고수준에서 노력한다. 정책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득이 비용을 넘어서고 분배효과가 고려되며 순 편익이 최대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과 집행체제를 가져야 한다.

1.1 규제정책은 정부가 정책과제를 식별할 때 정책도구로서 규제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규제와 규제체계가 공익을 꾀하도록 보장하는 명확한 정책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목표 식별부터 규제 설계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규제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적인 정책주기를 채택한다.
- 적합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사용하며, 이 때 정부규제의 질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을 적용한다.
- 규제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는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주요부분으로서 사전 영향분석과 사후 평가를 포함한다.
- 규제정책 목표, 전략, 그리고 혜택을 명확히 한다.
- 구식이거나,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식별하여 삭제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규제품질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소통전략을 개발, 집행, 그리고 평가한다.

1.2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정책, 기관, 그리고 도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모든 정부 수준과 모든 부문이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입법부가 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 영향분석과 행정간소화 등 구체적인 항목들은 중요하지만 포괄적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 규제가 경쟁력과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 부문별 정책을 집행하는 규제를 준비할 때 규제정책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규제가 무역, 경쟁,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며 이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공익을 꾀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실천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직적 위험을 줄인다.
- 규제의 영향과 규제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타당한 규제목표는 타협하지 않되 행정적 비용과 준수 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3 규제정책이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고 조정가능하도록, 정부는 전략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한다. 규제 개입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지를 고려하고 식별하는 전략적 역량을 포함하여, 기존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으로 대중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기능이다.

1.4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이고 구속력있는 정책선언서를 정부가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규제정책 도구와 절차 사용에 관한 지침서가 포함된다. 규제시행을 포함한 규제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제와 자원이 적합하며 규제간극을 메우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1.5 규제정책은 실적에 기초한 규제를 선호하도록 되어 하며,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

1.6 규제정책은 장관들이 각자의 직무내에서 규제정책을 실천할 책임사항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정 장관에게 규제품질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 운영을 유지 및 개선하고, 규제 거버넌스 과정을 위한 감독과 지도력을 제공할 정치적 책임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관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부처 간 규제개혁활동 조율의 모니터링과 보고
- 의도한 결과 대비 규제관리 시스템의 실적에 대한 보고
- 규제정책 설정과 규제관리관행 전반의 개선점 식별

2.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한 개방정부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규제 시 공익을 피하며 규제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자의 타당한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규제제안 초안 작성과 이를 위한 분석의 품질관리 준비 과정에 대중이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온라인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가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이 쉽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2.1 정부는 규정수립에 대한 개방적이고 균형잡힌 공공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2 정부는 기존규제와 개발중인 새로운 규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다음과 같이 협력해야 한다:

- 전달되는 정보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규제수립과정과 협의과정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영향평가분석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협의하고, 예를 들어 협의과정의 일부로서 영향분석을 사용한다.
- 보충분석을 포함한 규제서류 중 모든 관련문서와 규제의사결정의 이유,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공개한다.

- 규제 영향에 받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규제평가를 설계하며, 우선순위 결정, 규제평가, 간소화 제안서 작성을 포함한 평가의 설계와 집행 과정 내내 이들과 꾸준히 협력한다.
- 규제가 시장 내 다양한 경제 참가자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2.3 규제와 규제체계에 대한 정기적 실적평가를 도입하고, 이 때 당사자들이 받는 영향과 그 영향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물을 대중에게 전달한다.

2.4 조사와 집행에 관한 정책과 관행이 집행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와 시행을 통해 순수한 공익을 극대화하며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한다.

2.5 모든 규제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하고 최신식의 법·규제 데이터베이스 최신본이 인터넷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가능한 형태로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2.6 정부는 규제본문이 쉬운 말로 작성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규제본문은 또한 규제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규제정책 과정과 목표를 감독하고, 규제정책을 지지 및 집행하고, 그럼으로써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한다.

3.1 규제감독을 맡고 있는 상설기관은 정부 수뇌부와 가까운 곳에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제가 범정부적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각 거버넌스 시스템에 맞춰져야 한다.

3.2 규제감독기관의 권한은 법규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명령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영향평가의 질에 대한 평가나 자문과 같은 기술적 기능을 할 때, 그 기관은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3.3 규제감독기관은 수준 높고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능 또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향평가의 질에 대한 평가와 영향평가가 부족한 규제제안의 반려 두 가지를 통한 품질보장
- 규제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잠재적 가능성 살펴보기 - 이는 규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규제조치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규제정책 집행의 체계적 향상에 기여하기

- 정책 개정과 사전방법 개정을 위한 사후평가 조정하기
- 영향평가와 사전방식 개선전략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제공하기

3.4 감독을 맡은 기관의 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적을 규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이하 RIA)을 새로운 규제제안 수립 시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 통합시킨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가 정책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평가를 한다. 규제 이외의 방법을 고려하며 최상의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된 여러 접근법 간의 장단점을 식별한다.

4.1 규제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사전영향평가 관행을 채택하고,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지 식별하는 장기간의 분배상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규제에 의해 복지가 받는 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시킨다.

4.2 사후평가정책들은 구체적인 정책수요의 식별, 또는 시장실패의 수정과 같은 규제의 목표나 규제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시민의 권리를 지킬 필요성 등을 요구해야 한다.

4.3 사후평가정책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 또는 수단의 조합을 식별하고 선정하기 위한 규제 및 비규제적 대안들을 포함하여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비실행옵션(no action plan) 또는 기본 시나리오는 항상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후평가는 대다수의 경우에 규제, 교육, 임의표준의 결합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방식들을 포함하여 사회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방식들을 식별해야 한다.

4.4 규제안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엔 비용, 이익, 위험성에 대한 사전평가가 가능하다면 양적이 되어야 한다. 규제비용에는 회사, 시민, 정부가 부담하는 직접비용(행정, 재무, 자본비용)과 간접비용(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적절할 경우 사전평가는 형평성, 공평함, 분배효과와 같이 수량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향에 대해 질적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4.5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제안과 함께 가능한 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분석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인풋을 얻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알맞은 형식으로 적당한 시간 내에 준비되어야 한다. 좋은 관행은 규제영향분석을 협의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다.

4.6 사전평가정책은 규제가 경쟁과 소비자복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향상시켜야 하고 공익에 좌우되는 규제가 경쟁과정에 영향을 끼칠 경우 관계당국이 부작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규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익과 비교해서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의 목표들이 다른 덜 제약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4.7 평가를 이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며(가능할 경우 양적 및 금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공간적 영향을 고려한다.
- 국제적 공통도구를 채택하는 것이 식별된 정책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개별국가나 국제시장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일관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행정비용과 준수비용이 어떻게 최소화 되는지 보여준다.

4.8 규제영향평가는 명백한 정책, 교육 프로그램, 자료수집과 사용을 위한 지침과 품질관리 메커니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초기에 통합되고 정부수뇌기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5. 비용편익 고려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정책목표와 대조하여 주요규제를 평가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규제가 최선적이고 비용이 정당화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5.1 규제영향분석법은 기존규제의 검토와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규제수단의 더 나은 디자인을 포함하여 규제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과 회사에 대한 규제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포함해야만 한다.

5.2 가능하면 모든 주요한 규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규제스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이며, 규제의 의도치 않은 주요한 잠재적 결과를 식별하도록 검토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비효율적 규제와 사용자에게 주요한 경제적 영향을 주거나 위험관리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식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본법 내 검토조항이나 하위법의 소멸시효와 같은 규정들을 포함시킬 경우 영구검토 메커니즘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5.3 검토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달성의 진행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5.4 행정간소화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다면 규제의 총 부담을 측정해야 하고 시민과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확한 대상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노력의 초점을 필요한 곳에 잘 맞추기 위해 질적 방식이 양적 방식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5.5 서비스제공을 보다 능률적으로 만들고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기술의 기회와 자격증, 허가증, 그 외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원스탑숍(one-stop shop)을 활용한다.

5.6 시민과 기업이 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수단들을 검토한다.

6. 규제정책 및 개혁프로그램과 규제를 적용하는 당국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그와 같은 보고서에는 규제영향평가(RIA), 공공협의관행, 기존규제의 검토와 같은 규제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6.1 정부 내 규제제공 개선프로그램들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그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확히 식별된 목표들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6.2 정보수집과 정보관리전략을 디자인하고 평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은 피하면서 필요한 고품질 정보가 보고서 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3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외부검토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감독기구에 의한 RIA평가가 예를 들어 감사원과 같은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6.4 간소화 및 개혁 프로그램들은 필요한 자원에 기초하여 그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공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소된 행정적 부담의 양에 앞서 평가는 우선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결과와 영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7.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는 일관된 정책을 개발한다. 이는 규제 관련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충돌이나 편견, 또는 부적절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일관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7.1 규제권을 특정한 단체에 부여하는 법은 그 법의 목적과 그 권한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7.2 규제시스템 내에서 규제기관들이 통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의 공식기록을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 그 기록에는 각 규제기관의 법정목표의 세부내용과 그 기관이 관리하는 규제수단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7.3 독립규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이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어야 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같은 체계하에서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경쟁적 중립성이 필요할 경우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이 규제를 받는 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거나 기관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7.4 규제기관이 청렴성, 정직성, 객관성,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주는 공공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7.5 규제기관은 법률a)과 지침b), 또는 다른 종류의 연성법c) 초안을 작성할 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RIA 수행을 포함하여 규제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7.6 기관실적은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8. 규제의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공정성 검토1)와 규제제재를 가할 권한이 부여된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을 검토2)하기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시민과 기업체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적절하게 결정을 받도록 보장한다.

8.1 공공기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기업체들은 권한행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제재(예, 규제에 따라 당국이 부과한 제재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8.2 이 시스템에는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한 법적 절차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규제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포함된다. 또한 규제기관들이 자신들의 결정 근거로 사용하는 헌법적 규범을 포함한 상위 법규범에 관한 법 규정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해야 한다.

8.3 원칙적으로 원래 규제결정을 내린 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에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8.4 적절할 경우, 정부는 신청자들이 행정결정이 내려지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표준시간을 수립해야 한다.

9. 규제의 설계와 이행 시에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전략을 적절히 적용시켜 규제가 효과적이고 선별적이 되도록 한다. 규제기관은 규제가 어떻게 실시될지 평가해야 하며 반응성이 높은 이행 및 집행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9.1 정부는 위험과 규제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공개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대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활용과 관련하여 위험평가법, 위험관리법, 위험소통법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9.2 규제기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 상호검토를 통해 중요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주요한 규제안에 동반되는 위험평가검토를 위한 책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9.3 재앙적이거나 조직적인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도치 않은 결과나 “위험 대 위험” 상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행위를 식별하고 알리는 위험전략의 역량과 비교하여 위험전략의 예상 효율성을 평가하라.

9.4 정부는 준수 및 시행 절차를 통해 준수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에 기초한 접근법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9.5 위험에 기초한 기준에 대한 규제준수전략을 개발, 이행, 검토하도록 규제기관에게 요구되어야 한다.

9.6 예방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규제기관은 과학적 정보가 이용가능해질 때 책임성 있는 검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 적절할 경우, 초국가 정부기관, 국가 정부기관, 하위 정부기관 간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규제 일관성을 증진시킨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는 교차 규제문제를 식별하여 규제방식 간 일관성을 증진하고 규제의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한다.

10.1 모든 수준의 정부를 위한 규제정책과 규제관행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조정메커니즘을 설계한다. 적절할 경우, 조화를 위한 조치들을 활용하거나 상호공인협정을 통해 한다.

10.2 중복된 규제를 식별하고 개혁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초국가적 기구포함)에 해당되는 규제문제를 진단할 도구를 개발한다.

10.3 규제설계 시 효과적인 협의절차를 개발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전반적인 규제정책에 지역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의 지역업체 및 시민과의 근접성을 활용한다.

10.4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규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수준의 정부들 사이 정보공유 및 투명성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0.5 다양한 관할지역들에서의 효과적인 기준점 활용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규제관행을 전파한다.

10.6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규제방식상의 지역편차와 실험을 촉진한다.

10.7 규범제정권이 있는 초국가적 기관들은 이 권고안의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하고 적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1. 하위정부들의 규제관리 역량 및 성과를 발전시킨다.

11.1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고, 투자, 사업성장,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역수준에서의 규제비용과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이 규제정책과 규제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11.2 하위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평가 및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11.3 법적 공백, 불일치, 중복,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개혁 및 간소화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분야들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하위정부수준에서 장려한다.

11.4 효율적 행정을 촉진해야 하고, 규제비용은 추가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비용복구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11.5 적절한 인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고 적절할 경우 전자정부와 행정간소화를 장려하여 하위정부 수준에서의 규제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1.6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시장의 매끄러운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식별하고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규제나 수정규제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하위정부들이 규제영향평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사용한다.

11.7 관할권 간 수평적 조정을 촉진할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이는 내부시장의 매끄러운 운영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출혈경쟁의 위험을 제한하며, 지역관할지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11.8 하위정부들의 역할을 규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 하나로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12. 규제조치 개발 시에 모든 관련 국제기준과 동일분야 내 협력을 위한 체제를 고려하고, 적절할 경우 그것들이 관할지역 밖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한다.

12.1 점점 더 세계화되는 경제 속에서 국제 규제협력이 조직적 위험관리와 장기적 정책기획에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12.2 국제적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안 작성 시 관련 국제 규제환경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12.3 정부는 그들의 국제조약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예, ILO, UN, WTO/GATT 협정. 이들은 외국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해 하등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2.4 정부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모범관행과 혁신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12.5 정부는 민간 또는 준민간 부문 협의를 포함하여 더 많은 국제규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국제논의에 기여해야 한다.

12.6 기존 규제와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공익을 성취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제활동에 있어 노력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12.7 규제안 협의과정 시 외국과 국내 이익단체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